

규 제 등 록 서

등록번호		인천광역시 검단구-2026-0074		등록일자		2026-07-31	
규제명		검단복지회관 이용대상					
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부처(청)		문화체육관광부	
법적근거	상위법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인천광역시 검단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규칙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		문화공보		유형		1호 - 허가	
사무 특성	자치사무	법규 공포일	2026-07-01	등록사유		신설규제	
규제시행 /폐지일		2026-07-01		존속기한			
규제재검토							
규제목적		검단복지회관 이용대상					
규제내용		인천광역시 검단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이용대상)검단복지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 2.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3. 그 밖에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록이후 변동경과		○ 2026.7.1.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검단구 조례 신설					
기타							

규 제 등 록 서

등록번호		인천광역시 검단구-2026-0073		등록일자		2026-07-31	
규제명		치매센터 위탁운영 신청					
처리기관		치매보건과		소관부처(청)		보건복지부	
법적근거	상위법	치매관리법 제20조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인천광역시 검단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칙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		사회복지		유형		3호 - 제출의무	
사무 특성	위임사무	법규 공포일	2026-07-01	등록사유		신설규제	
규제시행 /폐지일		2026-07-01		존속기한			
규제재검토							
규제목적		치매센터 위탁운영 신청					
규제내용		인천광역시 검단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수탁자 선정) ① 제5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응모자가 없을 경우에는 수의 계약도 가능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록이후 변동경과		○ 2026.7.1.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검단구 조례 신설					
기타							

규 제 등 록 서

등록번호		인천광역시 검단구-2026-0072		등록일자		2026-07-31	
규제명		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 제한					
처리기관		총무과		소관부처(청)		행정안전부	
법적근거	상위법						
	시행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					
	시행규칙						
	조례						
	규칙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10조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		지방행정		유형		3호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사무 특성	위임사무	법규 공포일	2026-07-01	등록사유		신설규제	
규제시행 /폐지일		2026-07-01		존속기한			
규제재검토							
규제목적		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 제한					
규제내용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10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록이후 변동경과		○ 2026.7.1.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검단구 조례 신설					
기타							

규 제 등 록 서

등록번호		인천광역시 검단구-2026-0071		등록일자	2026-07-31
규제명		응시자의 제출서류			
처리기관		총무과		소관부처(청)	행정안전부
법적근거	상위법				
	시행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			
	시행규칙				
	조례				
	규칙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10조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		지방행정		유형	3호 - 제출의무
사무 특성	자치사무	법규 공포일	2026-07-01	등록사유	신설규제
규제시행 /폐지일		2026-07-01		존속기한	
규제재검토					
규제목적		응시자의 제출서류			
규제내용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10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록이후 변동경과		○ 2026.7.1.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검단구 조례 신설			
기타					

규 제 등 록 서

등록번호		인천광역시 검단구-2026-0070		등록일자	2026-07-31	
규제명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불반환				
처리기관		총무과		소관부처(청)	행정안전부	
법적근거	상위법	지방자치법 제8조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규칙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0조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		행정일반		유형	4호 - 기타(부담금징수 등)	
사무 특성	위임사무	법규 공포일	2026-07-01	등록사유	신설규제	
규제시행 /폐지일		2026-07-01		존속기한		
규제재검토						
규제목적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불반환				
규제내용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수강 및 사용신청의 취소)수강(사용)자가 납부한 수강(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반환한다. 다만, 그 밖의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예에 따른다. 1. 자치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수강료 전액환불)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록이후 변동경과		○ 2026.7.1.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검단구 조례 신설				
기타						

규 제 등 록 서

등록번호		인천광역시 검단구-2026-0069		등록일자	2026-07-31
규제명		자원봉사센터 직원임용 자격요건			
처리기관		총무과		소관부처(청)	행정안전부
법적근거	상위법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			
	시행령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4조			
	시행규칙				
	조례				
	규칙	인천광역시 검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9조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		지방행정		유형	3호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사무 특성	위임사무	법규 공포일	2026-07-01	등록사유	신설규제
규제시행 /폐지일		2026-07-01		존속기한	
규제재검토					
규제목적		자원봉사센터 직원임용 자격요건			
규제내용		인천광역시 검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직원의 임용 등) ① 센터의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은 센터장, 사무국장, 팀장, 운영요원으로 구분한다. ② 센터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선임하며 사무국장, 팀장, 운영요원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라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센터장이 임용한다.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록이후 변동경과		○ 2026.7.1.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검단구 조례 신설			
기타					

규 제 등 록 서

등록번호		인천광역시 검단구-2026-0068		등록일자	2026-07-31
규제명		변상금의 분할납부			
처리기관		재무과		소관부처(청)	행정안전부
법적근거	상위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7조			
	규칙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		지방재정		유형	3호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사무 특성	위임사무	법규 공포일	2026-07-01	등록사유	신설규제
규제시행 /폐지일		2026-07-01		존속기한	
규제재검토					
규제목적		변상금의 분할납부			
규제내용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7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50만원 초과: 6개월 2회 이내 분납 2. 100만원 초과: 1년 4회 이내 분납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록이후 변동경과		○ 2026.7.1.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검단구 조례 신설			
기타					

규 제 등 록 서

등록번호		인천광역시 검단구-2026-0067		등록일자	2026-07-31
규제명		청결유지 미이행자 과태료 부과 기준			
처리기관		자원순환과		소관부처(청)	기후에너지환경부
법적근거	상위법	폐기물관리법 제7조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인천광역시 검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칙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		환경		유형	2호 - 명령(시정 등)
사무 특성	위임사무	법규 공포일	2026-07-01	등록사유	신설규제
규제시행 /폐지일		2026-07-01		존속기한	
규제재검토					
규제목적		청결유지 미이행자 과태료 부과 기준			
규제내용		인천광역시 검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청결유지 조치) ①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록이후 변동경과		○ 2026.7.1.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검단구 조례 신설			
기타					

규 제 등 록 서

등록번호		인천광역시 검단구-2026-0066		등록일자		2026-07-31	
규제명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처리기관		자원순환과		소관부처(청)		기후에너지환경부	
법적근거	상위법	폐기물관리법 제4조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인천광역시 검단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칙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		환경		유형		2호 - 지도(감독,권고)	
사무 특성	위임사무	법규 공포일	2026-07-01	등록사유		신설규제	
규제시행 /폐지일		2026-07-01		존속기한			
규제재검토							
규제목적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규제내용		인천광역시 검단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8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록이후 변동경과		○ 2026.7.1.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검단구 조례 신설					
기타							

규 제 등 록 서

등록번호		인천광역시 검단구-2026-0065		등록일자	2026-07-31
규제명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처리기관		자원순환과		소관부처(청)	기후에너지환경부
법적근거	상위법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3항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인천광역시 검단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6조			
	규칙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		환경		유형	3호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사무 특성	위임사무	법규 공포일	2026-07-01	등록사유	신설규제
규제시행 /폐지일		2026-07-01		존속기한	
규제재검토					
규제목적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규제내용		인천광역시 검단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가 처리, 재활용계획이 포함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록이후 변동경과		○ 2026.7.1.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검단구 조례 신설			
기타					

규 제 등 록 서

등록번호		인천광역시 검단구-2026-0064		등록일자	2026-07-31
규제명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방법			
처리기관		자원순환과	소관부처(청)		기후에너지환경부
법적근거	상위법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인천광역시 검단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칙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		환경		유형	3호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사무 특성	위임사무	법규 공포일	2026-07-01	등록사유	신설규제
규제시행 /폐지일		2026-07-01		존속기한	
규제재검토					
규제목적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방법			
규제내용		인천광역시 검단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정하여야 하며,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은 별표 1과 같다.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록이후 변동경과		○ 2026.7.1.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검단구 조례 신설			
기타					

규 제 등 록 서

등록번호		인천광역시 검단구-2026-0063		등록일자		2026-07-31	
규제명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처리기관		자원순환과		소관부처(청)		기후에너지환경부	
법적근거	상위법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인천광역시 검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칙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		환경		유형		3호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사무 특성	위임사무	법규 공포일	2026-07-01	등록사유		신설규제	
규제시행 /폐지일		2026-07-01		존속기한			
규제재검토							
규제목적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규제내용		인천광역시 검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해당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20:00 부터 24:00까지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고, 자동집하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투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록이후 변동경과		○ 2026.7.1.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검단구 조례 신설					
기타							

규 제 등 록 서

등록번호		인천광역시 검단구-2026-0062		등록일자	2026-07-31
규제명		쓰레기봉투 판매업소 지정 취소			
처리기관		자원순환과		소관부처(청)	기후에너지환경부
법적근거	상위법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5항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규칙	인천광역시 검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		환경		유형	2호 - 행정질서별(허가취소 등)
사무 특성	위임사무	법규 공포일	2026-07-01	등록사유	신설규제
규제시행 /폐지일		2026-07-01		존속기한	
규제재검토					
규제목적		쓰레기봉투 판매업소 지정 취소			
규제내용		인천광역시 검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판매소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2. 구청장이 규정한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을 위반하여 판매하는 경우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록이후 변동경과		○ 2026.7.1.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검단구 조례 신설			
기타					

규 제 등 록 서

등록번호		인천광역시 검단구-2026-0061		등록일자	2026-07-31
규제명		쓰레기봉투 판매업소 지정			
처리기관		자원순환과		소관부처(청)	기후에너지환경부
법적근거	상위법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5항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규칙	인천광역시 검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		환경		유형	1호 - 지정
사무 특성	위임사무	법규 공포일	2026-07-01	등록사유	신설규제
규제시행 /폐지일		2026-07-01		존속기한	
규제재검토					
규제목적		쓰레기봉투 판매업소 지정			
규제내용		인천광역시 검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쓰레기봉투 판매소지정) ① 쓰레기봉투 판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판매소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쓰레기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록이후 변동경과		○ 2026.7.1.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검단구 조례 신설			
기타					

규 제 등 록 서

등록번호		인천광역시 검단구-2026-0060		등록일자	2026-07-31
규제명		쓰레기봉투 판매업자 준수사항			
처리기관		자원순환과		소관부처(청)	기후에너지환경부
법적근거	상위법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5항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규칙	인천광역시 검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		환경		유형	3호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사무 특성	위임사무	법규 공포일	2026-07-01	등록사유	신설규제
규제시행 /폐지일		2026-07-01		존속기한	
규제재검토					
규제목적		쓰레기봉투 판매업자 준수사항			
규제내용		인천광역시 검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판매자 준수사항) ① 제2조에 따라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쓰레기봉투 판매에 필요한 시설정비 및 판매가격표 게시 2. 쓰레기봉투 판매지정서 및 표시판을 소비자가 볼 수 있는 곳에 게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록이후 변동경과		○ 2026.7.1.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검단구 조례 신설			
기타					

규 제 등 록 서

등록번호		인천광역시 검단구-2026-0059		등록일자	2026-07-31
규제명		쓰레기봉투 폐휴업등의 신고			
처리기관		자원순환과		소관부처(청)	기후에너지환경부
법적근거	상위법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5항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규칙	인천광역시 검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		환경		유형	3호 - 신고의무
사무 특성	위임사무	법규 공포일	2026-07-01	등록사유	신설규제
규제시행 /폐지일		2026-07-01		존속기한	
규제재검토					
규제목적		쓰레기봉투 폐휴업등의 신고			
규제내용		인천광역시 검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판매소의 폐업·휴업 등의 신고)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폐업 또는 휴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판매소 폐업·휴업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록이후 변동경과		○ 2026.7.1.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검단구 조례 신설			
기타					

규 제 등 록 서

등록번호		인천광역시 검단구-2026-0058		등록일자	2026-07-31
규제명		쓰레기봉투 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신고			
처리기관		자원순환과		소관부처(청)	기후에너지환경부
법적근거	상위법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5항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규칙	인천광역시 검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		환경		유형	3호 - 신고의무
사무 특성	위임사무	법규 공포일	2026-07-01	등록사유	신설규제
규제시행 /폐지일		2026-07-01		존속기한	
규제재검토					
규제목적		쓰레기봉투 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신고			
규제내용		인천광역시 검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상호 및 명의를 변경하고 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록이후 변동경과		○ 2026.7.1.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검단구 조례 신설			
기타					

규 제 등 록 서

등록번호		인천광역시 검단구-2026-0057		등록일자	2026-07-31
규제명		분리배출지역 지정			
처리기관		자원순환과		소관부처(청)	기후에너지환경부
법적근거	상위법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1항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규칙	인천광역시 검단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		환경		유형	1호 - 지정
사무 특성	위임사무	법규 공포일	2026-07-01	등록사유	신설규제
규제시행 /폐지일		2026-07-01		존속기한	
규제재검토					
규제목적		분리배출지역 지정			
규제내용		인천광역시 검단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 지정) 「인천광역시 검단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전 지역으로 한다.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록이후 변동경과		○ 2026.7.1.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검단구 조례 신설			
기타					

규 제 등 록 서

등록번호		인천광역시 검단구-2026-0056		등록일자	2026-07-31	
규제명		납부필증 판매자의 준수사항				
처리기관		자원순환과		소관부처(청)	기후에너지환경부	
법적근거	상위법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규칙	인천광역시 검단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		환경		유형	3호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사무 특성	위임사무	법규 공포일	2026-07-01	등록사유	신설규제	
규제시행 /폐지일		2026-07-01		존속기한		
규제재검토						
규제목적		납부필증 판매자의 준수사항				
규제내용		인천광역시 검단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납부필증 판매자의 준수사항) ① 납부필증 판매자는 납부필증을 판매할 때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주민편의를 위하여 납부필증 및 전용봉투의 충분한 확보 2. 불법 납부필증 및 전용봉투의 진열 및 판매 금지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록이후 변동경과		○ 2026.7.1.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검단구 조례 신설				
기타						

규 제 등 록 서

등록번호		인천광역시 검단구-2026-0055		등록일자	2026-07-31	
규제명		공동배출 신청자의 이행사항				
처리기관		자원순환과		소관부처(청)	기후에너지환경부	
법적근거	상위법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규칙	인천광역시 검단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		환경		유형	3호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사무 특성	위임사무	법규 공포일	2026-07-01	등록사유	신설규제	
규제시행 /폐지일		2026-07-01		존속기한		
규제재검토						
규제목적		공동배출 신청자의 이행사항				
규제내용		인천광역시 검단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공동배출 신청자의 이행사항)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동으로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동배출 신청서 제출 2.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방법 준수 및 전용수거용기 관리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록이후 변동경과		○ 2026.7.1.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검단구 조례 신설				
기타						

규 제 등 록 서

등록번호		인천광역시 검단구-2026-0054		등록일자		2026-07-31	
규제명		음식물류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 기준 부적합에 따른 조치, 공동주택 전용수거용기 설치					
처리기관		자원순환과		소관부처(청)		기후에너지환경부	
법적근거	상위법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인천광역시 검단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칙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		환경		유형		3호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사무 특성	위임사무	법규 공포일	2026-07-01	등록사유	신설규제		
규제시행 /폐지일		2026-07-01		존속기한			
규제재검토							
규제목적		음식물류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 기준 부적합에 따른 조치, 공동주택 전용수거용기 설치					
규제내용		인천광역시 검단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 효율을 증진하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록이후 변동경과		○ 2026.7.1.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검단구 조례 신설					
기타							

규 제 등 록 서

등록번호		인천광역시 검단구-2026-0053		등록일자	2026-07-31	
규제명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방법등				
처리기관		자원순환과		소관부처(청)	기후에너지환경부	
법적근거	상위법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인천광역시 검단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				
	규칙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		환경		유형	3호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사무 특성	위임사무	법규 공포일	2026-07-01	등록사유	신설규제	
규제시행 /폐지일		2026-07-01		존속기한		
규제재검토						
규제목적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방법등				
규제내용		인천광역시 검단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방법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영 제7조제2항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록이후 변동경과		○ 2026.7.1.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검단구 조례 신설				
기타						

규 제 등 록 서

등록번호		인천광역시 검단구-2026-0052		등록일자	2026-07-31	
규제명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처리기관		안전총괄과		소관부처(청)	행정안전부	
법적근거	상위법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인천광역시 검단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칙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		소방민방위		유형	3호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사무 특성	위임사무	법규 공포일	2026-07-01	등록사유	신설규제	
규제시행 /폐지일		2026-07-01		존속기한		
규제재검토						
규제목적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규제내용		인천광역시 검단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록이후 변동경과		○ 2026.7.1.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검단구 조례 신설				
기타						

규 제 등 록 서

등록번호		인천광역시 검단구-2026-0051		등록일자	2026-07-31	
규제명		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처리기관		안전총괄과		소관부처(청)	행정안전부	
법적근거	상위법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인천광역시 검단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칙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		소방민방위		유형	3호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사무 특성	위임사무	법규 공포일	2026-07-01	등록사유	신설규제	
규제시행 /폐지일		2026-07-01		존속기한		
규제재검토						
규제목적		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규제내용		인천광역시 검단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 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록이후 변동경과		○ 2026.7.1.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검단구 조례 신설				
기타						

규 제 등 록 서

등록번호		인천광역시 검단구-2026-0050		등록일자	2026-07-31
규제명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처리기관		안전총괄과		소관부처(청)	행정안전부
법적근거	상위법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인천광역시 검단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칙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		소방민방위		유형	3호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사무 특성	위임사무	법규 공포일	2026-07-01	등록사유	신설규제
규제시행 /폐지일		2026-07-01		존속기한	
규제재검토					
규제목적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규제내용		인천광역시 검단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로써 예시도는 별첨과 같다. 1.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록이후 변동경과		○ 2026.7.1.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검단구 조례 신설			
기타					

규 제 등 록 서

등록번호		인천광역시 검단구-2026-0049		등록일자	2026-07-31	
규제명		제설제빙작업의 시기				
처리기관		안전총괄과		소관부처(청)	행정안전부	
법적근거	상위법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인천광역시 검단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칙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		소방민방위		유형	3호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사무 특성	위임사무	법규 공포일	2026-07-01	등록사유	신설규제	
규제시행 /폐지일		2026-07-01		존속기한		
규제재검토						
규제목적		제설제빙작업의 시기				
규제내용		인천광역시 검단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설·제빙작업을 마쳐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가. 1월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미만인 경우 1) 주간에 눈이 그친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부터 3시간 이내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록이후 변동경과		○ 2026.7.1.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검단구 조례 신설				
기타						

규 제 등 록 서

등록번호		인천광역시 검단구-2026-0048		등록일자	2026-07-31	
규제명		제설제빙작업의 도구비치관리				
처리기관		안전총괄과		소관부처(청)	행정안전부	
법적근거	상위법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인천광역시 검단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칙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		소방민방위		유형	3호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사무 특성	위임사무	법규 공포일	2026-07-01	등록사유	신설규제	
규제시행 /폐지일		2026-07-01		존속기한		
규제재검토						
규제목적		제설제빙작업의 도구비치관리				
규제내용		인천광역시 검단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①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해당 건축물에 매년 11월15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은 건축물관리자에게 제설·제빙에 필요한 자재나 도구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록이후 변동경과		○ 2026.7.1.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검단구 조례 신설				
기타						

규 제 등 록 서

등록번호		인천광역시 검단구-2026-0047		등록일자	2026-07-31
규제명		제설제빙작업의 방법			
처리기관		안전총괄과		소관부처(청)	행정안전부
법적근거	상위법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인천광역시 검단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칙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		소방민방위		유형	3호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사무 특성	위임사무	법규 공포일	2026-07-01	등록사유	신설규제
규제시행 /폐지일		2026-07-01		존속기한	
규제재검토					
규제목적		제설제빙작업의 방법			
규제내용		인천광역시 검단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 ①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과 시설물 붕괴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 1. 보도의 눈과 얼음은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기는 방법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록이후 변동경과		○ 2026.7.1.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검단구 조례 신설			
기타					

규 제 등 록 서

등록번호		인천광역시 검단구-2026-0046		등록일자	2026-07-31
규제명		체육시설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부처(청)	행정안전부
법적근거	상위법	지방자치법 제22조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인천광역시 검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			
	규칙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		문화공보		유형	2호 - 행정질서별(허가취소 등)
사무 특성	위임사무	법규 공포일	2026-07-01	등록사유	신설규제
규제시행 /폐지일		2026-07-01		존속기한	
규제재검토					
규제목적		체육시설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규제내용		인천광역시 검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하도록 할 수 있다. 1. 사용목적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록이후 변동경과		○ 2026.7.1.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검단구 조례 신설			
기타					

규 제 등 록 서

등록번호		인천광역시 검단구-2026-0045		등록일자	2026-07-31	
규제명		체육시설 사용허가				
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부처(청)	행정안전부	
법적근거	상위법	지방자치법 제22조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인천광역시 검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칙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		문화공보		유형	1호 - 허가	
사무 특성	자치사무	법규 공포일	2026-07-01	등록사유	신설규제	
규제시행 /폐지일		2026-07-01		존속기한		
규제재검토						
규제목적		체육시설 사용허가				
규제내용		인천광역시 검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사용신청, 허가 등)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 ②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코자 하는 자는 사용자의 주소·성명·사용시설·사용목적·사용기간을 별지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록이후 변동경과		○ 2026.7.1.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검단구 조례 신설				
기타						

규 제 등 록 서

등록번호		인천광역시 검단구-2026-0044		등록일자	2026-07-31	
규제명		검단복지회관 시설물 등의 설치				
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부처(청)	문화체육관광부	
법적근거	상위법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규칙	인천광역시 검단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		문화공보		유형	1호 - 승인(승락)	
사무 특성	위임사무	법규 공포일	2026-07-01	등록사유	신설규제	
규제시행 /폐지일		2026-07-01		존속기한		
규제재검토						
규제목적		검단복지회관 시설물 등의 설치				
규제내용		인천광역시 검단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회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록이후 변동경과		○ 2026.7.1.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검단구 조례 신설				
기타						

규 제 등 록 서

등록번호		인천광역시 검단구-2026-0043		등록일자		2026-07-31	
규제명		검단복지회관 시설 사용허가 취소 및 중지					
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부처(청)		문화체육관광부	
법적근거	상위법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인천광역시 검단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					
	규칙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		문화공보		유형		2호 - 행정질서별(허가취소 등)	
사무 특성	위임사무	법규 공포일	2026-07-01	등록사유		신설규제	
규제시행 /폐지일		2026-07-01		존속기한			
규제재검토							
규제목적		검단복지회관 시설 사용허가 취소 및 중지					
규제내용		인천광역시 검단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중지)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1. 시설사용이 사용신청 및 허가내용과 반할 때 2.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때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록이후 변동경과		○ 2026.7.1.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검단구 조례 신설					
기타							

규 제 등 록 서

등록번호		인천광역시 검단구-2026-0042		등록일자	2026-07-31	
규제명		검단복지회관 시설 사용허가				
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부처(청)	문화체육관광부	
법적근거	상위법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인천광역시 검단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규칙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		문화공보		유형	1호 - 허가	
사무 특성	위임사무	법규 공포일	2026-07-01	등록사유	신설규제	
규제시행 /폐지일		2026-07-01		존속기한		
규제재검토						
규제목적		검단복지회관 시설 사용허가				
규제내용		인천광역시 검단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사용허가) ① 검단복지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다만, 교육수강, 수영장장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과 동시에 허가를 얻은 것으로 본다. ②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제6조에 따라 이를 허가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록이후 변동경과		○ 2026.7.1.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검단구 조례 신설				
기타						

규 제 등 록 서

등록번호		인천광역시 검단구-2026-0041		등록일자	2026-07-31	
규제명		장애인 체육동호회의 요건				
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부처(청)	문화체육관광부	
법적근거	상위법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7항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인천광역시 검단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제4조				
	규칙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		체육청소년		유형	3호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사무 특성	위임사무	법규 공포일	2026-07-01	등록사유	신설규제	
규제시행 /폐지일		2026-07-01		존속기한		
규제재검토						
규제목적		장애인 체육동호회의 요건				
규제내용		인천광역시 검단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제4조(장애인체육 동호회) ① 장애인체육 동호회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상시 구성 회원의 수는 장애인 10명 이상 2.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는 모임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록이후 변동경과		○ 2026.7.1.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검단구 조례 신설				
기타						

규 제 등 록 서

등록번호		인천광역시 검단구-2026-0040		등록일자	2026-07-31	
규제명		사용허가				
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부처(청)	문화체육관광부	
법적근거	상위법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규칙	인천광역시 검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		문화공보		유형	1호 - 허가	
사무 특성	위임사무	법규 공포일	2026-07-01	등록사유	신설규제	
규제시행 /폐지일		2026-07-01		존속기한		
규제재검토						
규제목적		사용허가				
규제내용		인천광역시 검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사용허가 등)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체육 시설 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변경허가) 신청서를 인 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록이후 변동경과		○ 2026.7.1.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검단구 조례 신설				
기타						

규 제 등 록 서

등록번호		인천광역시 검단구-2026-0039		등록일자	2026-07-30	
규제명		체육시설 사용자의 부대시설 설치				
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부처(청)	문화체육관광부	
법적근거	상위법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인천광역시 검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칙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		문화공보		유형	1호 - 승인(승락)	
사무 특성	위임사무	법규 공포일	2026-07-01	등록사유	신설규제	
규제시행 /폐지일		2026-07-01		존속기한		
규제재검토						
규제목적		체육시설 사용자의 부대시설 설치				
규제내용		인천광역시 검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사용자의 부대시설 설치)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시설의 설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용자의 부대시설에 대한 설치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록이후 변동경과		○ 2026.7.1.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검단구 조례 신설				
기타						

규 제 등 록 서

등록번호		인천광역시 검단구-2026-0038		등록일자	2026-07-30
규제명		편의용품의 비치, 제공			
처리기관		도시관리과		소관부처(청)	
법적근거	상위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칙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		지방행정		유형	3호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사무 특성	자치사무	법규 공포일	2026-07-01	등록사유	신설규제
규제시행 /폐지일		2026-07-01		존속기한	
규제재검토					
규제목적		편의용품의 비치, 제공			
규제내용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록이후 변동경과		○ 2026.7.1.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검단구 조례 신설			
기타					

규 제 등 록 서

등록번호		인천광역시 검단구-2026-0037		등록일자	2026-07-30
규제명		옥외광고물등의 허가,신고시 제출서류			
처리기관		도시관리과		소관부처(청)	행정안전부
법적근거	상위법				
	시행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시행규칙				
	조례	인천광역시 검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칙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		지방행정		유형	3호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사무 특성	위임사무	법규 공포일	2026-07-01	등록사유	신설규제
규제시행 /폐지일		2026-07-01		존속기한	
규제재검토					
규제목적		옥외광고물등의 허가,신고시 제출서류			
규제내용		인천광역시 검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록이후 변동경과		○ 2026.7.1.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검단구 조례 신설			
기타					

규 제 등 록 서

등록번호		인천광역시 검단구-2026-0036		등록일자	2026-07-30	
규제명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				
처리기관		도시관리과		소관부처(청)	행정안전부	
법적근거	상위법					
	시행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제1항				
	시행규칙					
	조례	인천광역시 검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칙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		지방행정		유형	3호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사무 특성	위임사무	법규 공포일	2026-07-01	등록사유	신설규제	
규제시행 /폐지일		2026-07-01		존속기한		
규제재검토						
규제목적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				
규제내용		인천광역시 검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6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 등)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 광고물 등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록이후 변동경과		○ 2026.7.1.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검단구 조례 신설				
기타						

규 제 등 록 서

등록번호		인천광역시 검단구-2026-0035		등록일자	2026-07-30	
규제명		가산금 및 과태료 처분의 통지				
처리기관		도시관리과		소관부처(청)	기후에너지환경부	
법적근거	상위법	지하수법 제41조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하수 관리 조례 제24조				
	규칙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		수자원		유형	2호 - 행정질서별(허가취소 등)	
사무 특성	위임사무	법규 공포일	2026-07-01	등록사유	신설규제	
규제시행 /폐지일		2026-07-01		존속기한		
규제재검토						
규제목적		가산금 및 과태료 처분의 통지				
규제내용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하수 관리 조례 제24조(가산금)구청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3퍼센트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록이후 변동경과		○ 2026.7.1.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검단구 조례 신설				
기타						

규 제 등 록 서

등록번호		인천광역시 검단구-2026-0034		등록일자	2026-07-30
규제명		변경신고대상 광고물			
처리기관		도시관리과		소관부처(청)	행정안전부
법적근거	상위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시행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시행규칙				
	조례	인천광역시 검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칙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		지방행정		유형	3호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사무 특성	위임사무	법규 공포일	2026-07-01	등록사유	신설규제
규제시행 /폐지일		2026-07-01		존속기한	
규제재검토					
규제목적		변경신고대상 광고물			
규제내용		인천광역시 검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 등)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 등을 제외하고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건물·토지·시설물·점표 등을 사용하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표시하는 벽면 이용간판 및 옥상간판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록이후 변동경과		○ 2026.7.1.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검단구 조례 신설			
기타					

규 제 등 록 서

등록번호		인천광역시 검단구-2026-0033		등록일자	2026-07-30	
규제명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처리기관		도시관리과		소관부처(청)	행정안전부	
법적근거	상위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				
	시행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시행규칙					
	조례	인천광역시 검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3조				
	규칙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		지방행정		유형	2호 - 행정질서별(허가취소 등)	
사무 특성	위임사무	법규 공포일	2026-07-01	등록사유	신설규제	
규제시행 /폐지일		2026-07-01		존속기한		
규제재검토						
규제목적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규제내용		인천광역시 검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3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록이후 변동경과		○ 2026.7.1.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검단구 조례 신설				
기타						

규 제 등 록 서

등록번호		인천광역시 검단구-2026-0032		등록일자	2026-07-30
규제명		공중화장실 관리대장 비치			
처리기관		도시관리과		소관부처(청)	행정안전부
법적근거	상위법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			
	규칙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		지방행정		유형	2호 - 지도(감독,권고)
사무 특성	위임사무	법규 공포일	2026-07-01	등록사유	신설규제
규제시행 /폐지일		2026-07-01		존속기한	
규제재검토					
규제목적		공중화장실 관리대장 비치			
규제내용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관리대장의 비치)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록이후 변동경과		○ 2026.7.1.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검단구 조례 신설			
기타					

규 제 등 록 서

등록번호		인천광역시 검단구-2026-0031		등록일자	2026-07-30
규제명		유료화장실 신고			
처리기관		도시관리과		소관부처(청)	행정안전부
법적근거	상위법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			
	규칙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		지방행정		유형	3호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사무 특성	위임사무	법규 공포일	2026-07-01	등록사유	신설규제
규제시행 /폐지일		2026-07-01		존속기한	
규제재검토					
규제목적		유료화장실 신고			
규제내용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및 별표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구청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록이후 변동경과		○ 2026.7.1.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검단구 조례 신설			
기타					

규 제 등 록 서

등록번호		인천광역시 검단구-2026-0030		등록일자	2026-07-30
규제명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처리기관		도시관리과	소관부처(청)	행정안전부	
법적근거	상위법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칙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		지방행정		유형	3호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사무 특성	위임사무	법규 공포일	2026-07-01	등록사유	신설규제
규제시행 /폐지일		2026-07-01		존속기한	
규제재검토					
규제목적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규제내용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록이후 변동경과		○ 2026.7.1.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검단구 조례 신설			
기타					

규 제 등 록 서

등록번호		인천광역시 검단구-2026-0029		등록일자	2026-07-30
규제명		유료화장실의 운영자 준수사항			
처리기관		도시관리과		소관부처(청)	행정안전부
법적근거	상위법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시행령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시행규칙				
	조례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8조			
	규칙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		지방행정		유형	3호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사무 특성	위임사무	법규 공포일	2026-07-01	등록사유	신설규제
규제시행 /폐지일		2026-07-01		존속기한	
규제재검토					
규제목적		유료화장실의 운영자 준수사항			
규제내용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8조(준수사항)제17조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9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2. 제17조에 따른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록이후 변동경과		○ 2026.7.1.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검단구 조례 신설			
기타					

규 제 등 록 서

등록번호		인천광역시 검단구-2026-0028		등록일자	2026-07-30	
규제명		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기준				
처리기관		도시관리과		소관부처(청)	행정안전부	
법적근거	상위법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6조				
	규칙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		지방행정		유형	3호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사무 특성	위임사무	법규 공포일	2026-07-01	등록사유	신설규제	
규제시행 /폐지일		2026-07-01		존속기한		
규제재검토						
규제목적		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기준				
규제내용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6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① 제15조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록이후 변동경과		○ 2026.7.1.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검단구 조례 신설				
기타						

규 제 등 록 서

등록번호		인천광역시 검단구-2026-0027		등록일자	2026-07-30
규제명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처리기관		도시관리과		소관부처(청)	기후에너지환경부
법적근거	상위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인천광역시 검단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칙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		국토도시개발		유형	3호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사무 특성	위임사무	법규 공포일	2026-07-01	등록사유	신설규제
규제시행 /폐지일		2026-07-01		존속기한	
규제재검토					
규제목적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규제내용		인천광역시 검단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중 최근접 인가(人家)의 부지 경계로부터 축사부지(예정포함) 경계(부지 경계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까지 직선거리로서 2,000m 이내 지역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록이후 변동경과		○ 2026.7.1.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검단구 조례 신설			
기타					

규 제 등 록 서

등록번호		인천광역시 검단구-2026-0026		등록일자	2026-07-30
규제명		매점 및 자동판매기 신청			
처리기관		노인장애인과		소관부처(청)	보건복지부
법적근거	상위법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칙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		사회복지		유형	3호 - 제출의무
사무 특성	위임사무	법규 공포일	2026-07-01	등록사유	신설규제
규제시행 /폐지일		2026-07-01		존속기한	
규제재검토					
규제목적		매점 및 자동판매기 신청			
규제내용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제4조(신청)제3조에 따른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을 원하는 자는 구 관내 거주자로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 신청서(시설의 장이 정한 소정양식) 2.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록이후 변동경과		○ 2026.7.1.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검단구 조례 신설			
기타					

규 제 등 록 서

등록번호		인천광역시 검단구-2026-0025		등록일자	2026-07-30
규제명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대상			
처리기관		노인장애인과		소관부처(청)	보건복지부
법적근거	상위법	노인복지법 제36조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인천광역시 검단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제9조			
	규칙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		사회복지		유형	1호 - 허가
사무 특성	위임사무	법규 공포일	2026-07-01	등록사유	신설규제
규제시행 /폐지일		2026-07-01		존속기한	
규제재검토					
규제목적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대상			
규제내용		인천광역시 검단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제9조(이용대상 및 사용료) ①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다만, 대강당, 소강당, 강의실 등 일부시설은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일반인에게도 사용할 수 있다.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록이후 변동경과		○ 2026.7.1.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검단구 조례 신설			
기타					

규 제 등 록 서

등록번호		인천광역시 검단구-2026-0024		등록일자	2026-07-30	
규제명		노인일자리참여자 등록				
처리기관		노인장애인과		소관부처(청)	보건복지부	
법적근거	상위법	노인복지법 제23조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인천광역시 검단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				
	규칙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		사회복지		유형	3호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사무 특성	위임사무	법규 공포일	2026-07-01	등록사유	신설규제	
규제시행 /폐지일		2026-07-01		존속기한		
규제재검토						
규제목적		노인일자리참여자 등록				
규제내용		인천광역시 검단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①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를 원하는 자 또는 단체 등은 신청에 의해 센터 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회원이 될 수 없다. 1. 전염성 질환자 및 정신 질환자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록이후 변동경과		○ 2026.7.1.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검단구 조례 신설				
기타						

규 제 등 록 서

등록번호		인천광역시 검단구-2026-0023		등록일자	2026-07-30	
규제명		노인일자리 참여자 등록취소				
처리기관		노인장애인과		소관부처(청)	보건복지부	
법적근거	상위법	노인복지법 제23조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인천광역시 검단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				
	규칙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		사회복지		유형	2호 - 지도(감독,권고)	
사무 특성	위임사무	법규 공포일	2026-07-01	등록사유	신설규제	
규제시행 /폐지일		2026-07-01		존속기한		
규제재검토						
규제목적		노인일자리 참여자 등록취소				
규제내용		인천광역시 검단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등록취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자에 대하여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자 2.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로 알게 된 공무상 비밀 또는 일자리사업 수요자의 사생활의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록이후 변동경과		○ 2026.7.1.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검단구 조례 신설				
기타						

규 제 등 록 서

등록번호		인천광역시 검단구-2026-0022		등록일자	2026-07-30	
규제명		장애인등의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처리기관		교통과		소관부처(청)	국토교통부	
법적근거	상위법					
	시행령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시행규칙					
	조례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8조				
	규칙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		국토도시개발		유형	3호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사무 특성	위임사무	법규 공포일	2026-07-01	등록사유	신설규제	
규제시행 /폐지일		2026-07-01		존속기한		
규제재검토						
규제목적		장애인등의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규제내용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8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주차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별표 1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 등의 전용주차의 설치기준은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0조를 적용하고, 전용 표지는 별표 7과 같다.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록이후 변동경과		○ 2026.7.1.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검단구 조례 신설				
기타						

규 제 등 록 서

등록번호		인천광역시 검단구-2026-0021		등록일자	2026-07-30	
규제명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주차요금의 가산금				
처리기관		교통과		소관부처(청)	국토교통부	
법적근거	상위법	주차장법 제9조 제2항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				
	규칙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		국토도시개발		유형	2호 - 행정질서별(허가취소 등)	
사무 특성	위임사무	법규 공포일	2026-07-01	등록사유	신설규제	
규제시행 /폐지일		2026-07-01		존속기한		
규제재검토						
규제목적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주차요금의 가산금				
규제내용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및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주차요금의 할인 등 징수금액을 모두 합산한 주차요금의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록이후 변동경과		○ 2026.7.1.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검단구 조례 신설				
기타						

규 제 등 록 서

등록번호		인천광역시 검단구-2026-0020		등록일자	2026-07-30	
규제명		주차거부 금지				
처리기관		교통과		소관부처(청)	국토교통부	
법적근거	상위법	주차장법 제8조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				
	규칙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		국토도시개발		유형	3호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사무 특성	위임사무	법규 공포일	2026-07-01	등록사유	신설규제	
규제시행 /폐지일		2026-07-01		존속기한		
규제재검토						
규제목적		주차거부 금지				
규제내용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주차거부의 금지)공영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록이후 변동경과		○ 2026.7.1.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검단구 조례 신설				
기타						

규 제 등 록 서

등록번호		인천광역시 검단구-2026-0019		등록일자	2026-07-30
규제명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 범위			
처리기관		교통과		소관부처(청)	국토교통부
법적근거	상위법	주차장법 제19조 제4항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0조			
	규칙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		국토도시개발		유형	3호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사무 특성	위임사무	법규 공포일	2026-07-01	등록사유	신설규제
규제시행 /폐지일		2026-07-01		존속기한	
규제재검토					
규제목적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 범위			
규제내용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0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시설물의 부지인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록이후 변동경과		○ 2026.7.1.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검단구 조례 신설			
기타					

규 제 등 록 서

등록번호		인천광역시 검단구-2026-0018		등록일자		2026-07-30	
규제명		청소년시설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처리기관		교육지원과		소관부처(청)		성평등가족부	
법적근거	상위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 제1항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규칙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		체육청소년		유형		3호 - 제출의무	
사무 특성	위임사무	법규 공포일	2026-07-01	등록사유		신설규제	
규제시행 /폐지일		2026-07-01		존속기한			
규제재검토							
규제목적		청소년시설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규제내용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사용신청·취하 등)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소년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시설 사용을 취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 취하원을 각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록이후 변동경과		○ 2026.7.1.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검단구 조례 신설					
기타							

규 제 등 록 서

등록번호		인천광역시 검단구-2026-0017		등록일자	2026-07-30
규제명		청소년시설 시설 사용 허가			
처리기관		교육지원과		소관부처(청)	성평등가족부
법적근거	상위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 제1항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규칙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		체육청소년		유형	1호 - 허가
사무 특성	위임사무	법규 공포일	2026-07-01	등록사유	신설규제
규제시행 /폐지일		2026-07-01		존속기한	
규제재검토					
규제목적		청소년시설 시설 사용 허가			
규제내용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시설 사용허가) ① 청소년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청소년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록이후 변동경과		○ 2026.7.1.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검단구 조례 신설			
기타					

규 제 등 록 서

등록번호		인천광역시 검단구-2026-0016		등록일자		2026-07-30	
규제명		청소년시설 사용허가 취소 등					
처리기관		교육지원과		소관부처(청)		성평등가족부	
법적근거	상위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 제1항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규칙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		체육청소년		유형		2호 - 행정질서별(허가취소 등)	
사무 특성	위임사무	법규 공포일	2026-07-01	등록사유		신설규제	
규제시행 /폐지일		2026-07-01		존속기한			
규제재검토							
규제목적		청소년시설 사용허가 취소 등					
규제내용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사용허가 취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관계 법령 및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록이후 변동경과		○ 2026.7.1.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검단구 조례 신설					
기타							

규 제 등 록 서

등록번호		인천광역시 검단구-2026-0015		등록일자	2026-07-30	
규제명		청소년시설 위탁운영 신청				
처리기관		교육지원과		소관부처(청)	성평등가족부	
법적근거	상위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규칙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		체육청소년		유형	3호 - 제출의무	
사무 특성	위임사무	법규 공포일	2026-07-01	등록사유	신설규제	
규제시행 /폐지일		2026-07-01		존속기한		
규제재검토						
규제목적		청소년시설 위탁운영 신청				
규제내용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위탁운영 신청 및 첨부서류)조례 제13조에 따른 시설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위탁운영 신청서를 작성,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운영계획서(수입 및 지출서 포함) 2. 청소년단체 등록증(법인의 경우 정관, 등기부등본)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록이후 변동경과		○ 2026.7.1.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검단구 조례 신설				
기타						

규 제 등 록 서

등록번호		인천광역시 검단구-2026-0014		등록일자		2026-07-30	
규제명		청소년시설 손해배상 및 손배보험 가입					
처리기관		교육지원과		소관부처(청)		성평등가족부	
법적근거	상위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9조					
	규칙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		체육청소년		유형		3호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사무 특성	위임사무	법규 공포일	2026-07-01	등록사유		신설규제	
규제시행 /폐지일		2026-07-01		존속기한			
규제재검토							
규제목적		청소년시설 손해배상 및 손배보험 가입					
규제내용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9조(보험가입 의무) ①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5조에 따라 청소년시설의 사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록이후 변동경과		○ 2026.7.1.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검단구 조례 신설					
기타							

규 제 등 록 서

등록번호		인천광역시 검단구-2026-0013		등록일자	2026-07-30	
규제명		공공도서관 이용회원 자격 취소 및 대출 제한				
처리기관		교육지원과		소관부처(청)	문화체육관광부	
법적근거	상위법	도서관법 제7조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규칙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		문화공보		유형	2호 - 지도(감독,권고)	
사무 특성	위임사무	법규 공포일	2026-07-01	등록사유	신설규제	
규제시행 /폐지일		2026-07-01		존속기한		
규제재검토						
규제목적		공공도서관 이용회원 자격 취소 및 대출 제한				
규제내용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회원의 자격취소 등)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을 취소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해 본인이 회원 탈퇴를 신청한 경우 2. 자료를 대출절차에 의하지 않고 도서관 밖으로 가지고 가는 경우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록이후 변동경과		○ 2026.7.1.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검단구 조례 신설				
기타						

규 제 등 록 서

등록번호		인천광역시 검단구-2026-0012		등록일자	2026-07-30	
규제명		공공도서관 시설의 사용허가				
처리기관		교육지원과		소관부처(청)	문화체육관광부	
법적근거	상위법	도서관법 제7조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				
	규칙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		문화공보		유형	1호 - 허가	
사무 특성	위임사무	법규 공포일	2026-07-01	등록사유	신설규제	
규제시행 /폐지일		2026-07-01		존속기한		
규제재검토						
규제목적		공공도서관 시설의 사용허가				
규제내용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사용허가 등)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록이후 변동경과		○ 2026.7.1.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검단구 조례 신설				
기타						

규 제 등 록 서

등록번호		인천광역시 검단구-2026-0011		등록일자	2026-07-30
규제명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			
처리기관		경제정책과		소관부처(청)	
법적근거	상위법				
	시행령				
	시행규칙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조례				
	규칙	인천광역시 검단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		재정경제		유형	1호 - 지정
사무 특성	위임사무	법규 공포일	2026-07-01	등록사유	신설규제
규제시행 /폐지일		2026-07-01		존속기한	
규제재검토					
규제목적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			
규제내용		인천광역시 검단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소매인의 영업소 간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록이후 변동경과		○ 2026.7.1.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검단구 조례 신설			
기타					

규 제 등 록 서

등록번호		인천광역시 검단구-2026-0010		등록일자	2026-07-30	
규제명		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처리기관		경제정책과		소관부처(청)	중소벤처기업부	
법적근거	상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인천광역시 검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9조				
	규칙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		상공업		유형	3호 - 제출의무	
사무 특성	위임사무	법규 공포일	2026-07-01	등록사유	신설규제	
규제시행 /폐지일		2026-07-01		존속기한		
규제재검토						
규제목적		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규제내용		인천광역시 검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9조(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 및 승인 취소 동의를 철회)토지등 소유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생년월일, 주소, 철회하고자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등 소유자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록이후 변동경과		○ 2026.7.1.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검단구 조례 신설				
기타						

규 제 등 록 서

등록번호		인천광역시 검단구-2026-0009		등록일자	2026-07-30
규제명		상인회의 등록			
처리기관		경제정책과	소관부처(청)	중소벤처기업부	
법적근거	상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인천광역시 검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2조			
	규칙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		상공업		유형	3호 - 등록의무
사무 특성	위임사무	법규 공포일	2026-07-01	등록사유	신설규제
규제시행 /폐지일		2026-07-01		존속기한	
규제재검토					
규제목적		상인회의 등록			
규제내용		인천광역시 검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2조(상인회 등록 등)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 또는 비용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20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한 경우에는 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명시된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법인인 상인회로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록이후 변동경과		○ 2026.7.1.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검단구 조례 신설			
기타					

규 제 등 록 서

등록번호		인천광역시 검단구-2026-0008		등록일자	2026-07-30
규제명		상인회의 등록취소			
처리기관		경제정책과	소관부처(청)	중소벤처기업부	
법적근거	상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인천광역시 검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3조			
	규칙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		상공업		유형	2호 - 행정질서별(허가취소 등)
사무 특성	위임사무	법규 공포일	2026-07-01	등록사유	신설규제
규제시행 /폐지일		2026-07-01		존속기한	
규제재검토					
규제목적		상인회의 등록취소			
규제내용		인천광역시 검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3조(상인회의 등록취소) ① 구청장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경우,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처분의 사전통지, 의견제출 및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 구청장은 그 내용을 상인회 대표자 등에게 지체 없이 알리고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록이후 변동경과		○ 2026.7.1.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검단구 조례 신설			
기타					

규 제 등 록 서

등록번호		인천광역시 검단구-2026-0007		등록일자	2026-07-30
규제명		임시시장의 등록			
처리기관		경제정책과		소관부처(청)	중소벤처기업부
법적근거	상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 제2항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인천광역시 검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7조			
	규칙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		상공업		유형	3호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사무 특성	위임사무	법규 공포일	2026-07-01	등록사유	신설규제
규제시행 /폐지일		2026-07-01		존속기한	
규제재검토					
규제목적		임시시장의 등록			
규제내용		인천광역시 검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7조(임시시장의 신고)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구청장은 제외한다)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록이후 변동경과		○ 2026.7.1.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검단구 조례 신설			
기타					

규 제 등 록 서

등록번호		인천광역시 검단구-2026-0006		등록일자	2026-07-30
규제명		상인회의 설립			
처리기관		경제정책과	소관부처(청)	중소벤처기업부	
법적근거	상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인천광역시 검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0조			
	규칙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		상공업		유형	3호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사무 특성	위임사무	법규 공포일	2026-07-01	등록사유	신설규제
규제시행 /폐지일		2026-07-01		존속기한	
규제재검토					
규제목적		상인회의 설립			
규제내용		인천광역시 검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0조(상인회의 설립) ① 시장·상권활성화구역·상점가의 상인회(이하“상인회”라 한다)는 규칙 제12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받아 설립한다. ② 상인회 회원은 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록이후 변동경과		○ 2026.7.1.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검단구 조례 신설			
기타					

규 제 등 록 서

등록번호		인천광역시 검단구-2026-0005		등록일자	2026-07-30
규제명		상인회 정관 등			
처리기관		경제정책과	소관부처(청)	중소벤처기업부	
법적근거	상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인천광역시 검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1조			
	규칙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		상공업		유형	3호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사무 특성	위임사무	법규 공포일	2026-07-01	등록사유	신설규제
규제시행 /폐지일		2026-07-01		존속기한	
규제재검토					
규제목적		상인회 정관 등			
규제내용		인천광역시 검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1조(상인회 정관 등) ① 상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이하“정관”이라 한다)을 따르며, 정관에는 규칙 제12조제5항의 내용 이 반영되어야 한다. ②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록이후 변동경과		○ 2026.7.1.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검단구 조례 신설			
기타					

규 제 등 록 서

등록번호		인천광역시 검단구-2026-0004		등록일자	2026-07-30	
규제명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건부과				
처리기관		경제정책과		소관부처(청)	산업통상부	
법적근거	상위법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3항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인천광역시 검단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칙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		상공업		유형	3호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사무 특성	위임사무	법규 공포일	2026-07-01	등록사유	신설규제	
규제시행 /폐지일		2026-07-01		존속기한		
규제재검토						
규제목적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건부과				
규제내용		인천광역시 검단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등록제한 및 부관 부과)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 검단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등록을 제한하거나 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행정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의 유보 등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록이후 변동경과		○ 2026.7.1.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검단구 조례 신설				
기타						

규 제 등 록 서

등록번호		인천광역시 검단구-2026-0003		등록일자	2026-07-30	
규제명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처리기관		경제정책과		소관부처(청)	산업통상부	
법적근거	상위법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인천광역시 검단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칙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		상공업		유형	1호 - 지정	
사무 특성	위임사무	법규 공포일	2026-07-01	등록사유	신설규제	
규제시행 /폐지일		2026-07-01		존속기한		
규제재검토						
규제목적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규제내용		인천광역시 검단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의3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제6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3조의3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록이후 변동경과		○ 2026.7.1.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검단구 조례 신설				
기타						

규 제 등 록 서

등록번호		인천광역시 검단구-2026-0002		등록일자	2026-07-30
규제명		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 지정			
처리기관		경제정책과		소관부처(청)	산업통상부
법적근거	상위법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2항, 제12조 제3항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규칙	인천광역시 검단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		상공업		유형	1호 - 지정
사무 특성	위임사무	법규 공포일	2026-07-01	등록사유	신설규제
규제시행 /폐지일		2026-07-01		존속기한	
규제재검토					
규제목적		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 지정			
규제내용		인천광역시 검단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제2항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록이후 변동경과		○ 2026.7.1.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검단구 조례 신설			
기타					

규 제 등 록 서

등록번호		인천광역시 검단구-2026-0001		등록일자	2026-07-30	
규제명		액화석유가스 허가요건				
처리기관		경제정책과		소관부처(청)	산업통상부	
법적근거	상위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 제3항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인천광역시 검단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칙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		에너지		유형	1호 - 허가	
사무 특성	위임사무	법규 공포일	2026-07-01	등록사유	신설규제	
규제시행 /폐지일		2026-07-01		존속기한		
규제재검토						
규제목적		액화석유가스 허가요건				
규제내용		인천광역시 검단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제3조(허가요건 등)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세부적인 허가요건 등은 [별표]와 같다.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록이후 변동경과		○ 2026.7.1.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검단구 조례 신설				
기타						